

서울고등법원 2018. 6. 22 선고 2017나2048339 판결 [보증금청구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H 주식회사(변경전 : 주식회사 B)

변 론 종결 2018. 5. 11.

판결 선고 2018. 6. 22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7. 선고 2017가합50303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I은, D이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582㎡, F 임야 582㎡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각토지'라 한다) 각 지상에 주택 2동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인 2014. 11. 5.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. D은 2014. 11. 24.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.

나. 원고와 C(이하 '원고 등')는 2015. 2. 17.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중 내장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)를 '공사대금: 3억 9,000만 원', '공사기간: 2015. 1.15.부터 2015. 3. 15.까지'로 정하여 수급하였다.

다.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D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였고, 그러자 D은 2015. 10. 8. 주식회사송빙(이하 '송빙'이라 한다)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면서 송빙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D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, 2016. 6.경 G가 송빙의 위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.

라.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G는 원고 등과, G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억 9,000만 원을 2016. 12. 31.까지 지급하되, 그에 관하여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고 G에 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.

마.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G는 2016. 7. 1. 피고와 특정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계약')을 체결하고, 피고로부터 '보증채권자: 원고', '보증금액: 3억 9,000만 원', '보증기간: 2016. 7. 1.부터 2016. 12. 31.까지'로 정한 지급보증서(이하 '이 사건 지급보증서')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.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시기에 관하여 '보증채무는

주채무자에게 1.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, 2. 파산, 화의 개시나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이행청구 할 수 있기로 한다'고 기재되어 있다.

바. 또한 G는 I 과, G가 1억 1,000만 원을 I 에게 지급하되, 이에 관한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가 사용, 수익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.

사. G는 위 약정에 따라 2016. 7. 1. 피고와, I을 보증채권자로, 보증금액을 1억 1,00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,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I 에게 교부하였다.

아. G는 피고의 회장으로 표기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는 J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I 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고, 지급보증서를 보증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려주고 위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.

자. G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건물을 G에게 인도하였으나 G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6. 12. 31.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, 이에 원고는 위 보증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2016. 12. 26.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당심증인 G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3억9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이에 대하여 피고는 G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담보 제공의무 및 보증수수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피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었고, 피고가 2016. 12. 7.경 G에게 위 보증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, 위

지급보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보증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지급보증서에 따른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. 따라서 이후 G가 피고에게 위 지급보증서 발급의 대가 등으로 약정한 담보제공 의무나 보증수수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G와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여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피고는,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용도는 특정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급보증(구매보증용)이고,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은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특정채무인데, G가 원고 등에 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은 구매보증이 아니고, 또한 보증기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2016. 12. 7. 보낸 내용증명에 G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보증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증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, 즉 G는 이 사건 보증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I에게 부담하는 1억 1,000만 원의 매매대금채무, 원고에게 부담하는 3억 9,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, G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리한 J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증채무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억 9,000만 원이고, 원고의 유치권 포기를 위해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사정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, G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I에게 교부할 1억 1,000만 원의 지급보증서를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함께 발급받은 점, G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의 일환으로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정에 비추어 구매보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, G가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등과 사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G에게

인도함으로써 위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주채무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,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 G가 담보제공의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증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을 뿐 당심 이전에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G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임을 알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피고는, 보증채무가 인정되더라도 G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원고 및 C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1억 9,500만 원의 보증채무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보증채권자가 원고로, 보증금액이 3억 9,000만 원으로 각 명시되어 있는 점,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, C가 동업자인바, G로서는 원고에게 전체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에게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보증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C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염려하는 이중지급의 위험도 없다).

4) 피고는,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,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.

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,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2015. 3. 15.로부터 3년이 경과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D이 2015. 7. 20.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.

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자인 D이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정하고, 유치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동의서(갑 제14호증의 1)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무렵 위

공사대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, 그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(아울러 D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G가 2016. 7. 1. 원고에게 이 사건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무렵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).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3억 9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7. 1. 1.부터(주채무자인 G에게 파산 등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, 그 전에 이행 청구한 이 사건에서 지체책임은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)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. 1. 31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심준보, 판사 정총령, 판사 김갑석